



고용노동부

서울지방고용노동청

수신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
(경유)

제목 4분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

1. 귀 현장의 무사고를 기원합니다.
2. 2022. 1. 27.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, 5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가 현재까지 전년 동기대비 유의미한 수치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 더 사고예방을 위해 집중을 해야할 때입니다.
3. 더욱이 10~11월(동절기 이전)은 연내 준공을 위하여 안전시설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큰 시기이고, 12월(동절기)은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·중독, 작업자 난방으로 인한 화기·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·용단 작업으로 화재·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.
4. 이에 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·사 합동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자율점검 후 점검표는 현장 내 보관)
 - 기간: '22.10.4.(화)~10.31.(월)
 - 대상: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
 - 방법: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, 미흡사항 개선

* 자율점검표는 서울청(www.moel.go.kr/seoul/) "뉴스·공지/알림"에 게재
5. 위와 같이 사전자율개선기간 부여 후 우리 청에서는 2022. 11. 1.(화)부터 12. 23.(금)까지 관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6. 각 건설현장에서는 주말·휴일에는 위험작업은 가능한 진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, 위험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소장, 안전관리자, 관리감독자의 관리하에 모든 안전시설을 확인 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고, 아울러 밀폐 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건설현장 자율점검표. 끝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


근로감독관 **김용선** 과장 전결 2022. 10. 4.
신동극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지도과-5410 (2022. 10. 4.) 접수

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(장교동 1 장교빌딩) 10층 건설 / moel.go.kr/seoul
산재지도과

전화번호 02-2250-5799 팩스번호 02-3789-3006 / lovekys4@korea.kr / 비공개(6,7)